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0. 1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6. 장정희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10. 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장정희 의원

가.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마포구민이 함께 협력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함

나. 주요내용

- 1)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 2)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3)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함 (안 제7조)

4)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마포구민이 함께 협력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다.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함 (안 제7조)

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적인 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2014. 5. 20. 제정)하였으며, 법 제2조는 발달장애의 범주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 규정함.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발달장애는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자기통제 능력 등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평생 동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장애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성폭력·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고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212,936명, 자폐성장애인 28,678명)은 241,61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2023년 7월 기준 마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2,956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1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전체 장애인들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 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 자기권리보장 등 자기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의 책무로 사회통합

이념에 부응하는 것이며,

○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및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원사업 중 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역시 적절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효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마포구 등록장애인 현황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 자폐)	기타
계	12,956	5,251	2,044	1,474	1,397	1,120	1,670
심한장애	4,984	1,058	439	342	839	1,120	1,186
심하지 않은 장애	7,972	4,193	1,605	1,132	558	-	484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현황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구 분	지원액	구 분	지원액	구 분	지원액
계	588,168	계	591,238	계	608,000
시비	498,168	시비	495,000	시비	498,000
구비	90,000	구비	96,238	구비	110,000